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7
----------	-------

발의연월일 : 2019. 4. 11.

발의자 : 민홍철 · 김정호 · 정인화

주승용 · 정성호 · 강훈식

이학재 · 기동민 · 전현희

최도자 · 안규백 · 홍의락

함진규 · 서형수 · 이동섭

윤후덕 · 안호영 · 여영국

추미애 의원(19인)

제안이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곧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그런데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문현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

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의 시대별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것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하고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

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 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자.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하도록 함(안 제19조).
- 차.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22조).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시대별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의 각 목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한반도 중북부 및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에 한정한다)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도읍지 공주, 부여, 익산과 백제 유적·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도읍지 경주와 인근 신라 유적·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존속한 고대 가야국이 위치한 김해, 고령 등 가야 제국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경남·경북·전남·전북 등 가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의 인문환경을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및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정비되어야 한다.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무형 유산은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의 구성요소) 역사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유형적·무형적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적 요소: 역사문화권의 형성·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거 공간, 통치공간, 종교공간, 생산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공간 간의 배치, 도로망, 자연환경 등의 요소

2. 무형적 요소: 역사문화권의 형성·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통,

풍습, 언어, 음식, 놀이, 기술, 민간신앙 등 역사문화권 내 삶의 방식과 역사문화권의 정체성·역사성을 형성하는 요소

제2장 역사문화권의 지정 등

제7조(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문화재 복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비사업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의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9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역사문화권의 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른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역사문화권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역사문화권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계·협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권이 제16조 또는 1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역사문화권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역사문화권의 지정·지정해제,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계획)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권의 관할 시·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작성한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본계획의 결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결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재청장은 결정·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 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 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문화재 복원) ①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복원 대상의 기준, 복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역사문화권의 정비

- 제16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

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등 및 제23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구역 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과 등록문화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정비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정비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작성한 시·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
 2. 정비사업이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극대화할 것
 3. 정비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
 4. 정비사업이 역사문화권 간의 연계·협력에 기여할 것
 5. 정비사업이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기여할 것
 6.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7. 정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⑦ 정비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20조(시행자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대체 지정 등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

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 이상의 시·도에 정비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정비구역 내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 허가는 제외한다.

- ②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혜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4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지원시책

제25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역사문화권 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

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의 지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정비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제28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정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중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경우 이 법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수립·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역사문화권 정비구 역
-----	-------------------------------	----------------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3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 · 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0.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반영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검토·심의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9.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허가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
호 ·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설 등의 승인
2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5.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환지방식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4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4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